

고 발 장

(고발시간 :)

20

주 소 :

은 행

지 점

지 점 장

출장소

출장소장

경 찰 서 장 귀하

부정수표 단속법 제 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.

1. 피고발인

1) 주 소(선택항목)

2) 직업 또는 상호

연락처(선택항목) 직장 TEL

3) 성 명

연락처(선택항목) 자택 TEL

4) 연 령

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
2. 고발(부도)사유

3. 수표의 표시

1) 기호번호

No.

2) 금 액

₩

3) 발행일자

년 월 일

4) 발 행 인

5) 지 급 지

6) 지급은행

은행

지점



4. 수표의 제시

1) 제시일자 년 월 일 (영업종료시간 :)

2) 제시지참인 또는 지급요청인

주 소(선택항목)

직 업

연락처(선택항목) 직장 TEL

성 명

연락처(선택항목) 자택 TEL

연 령

3) 제시방법

· 창 구

· 교환소 경우 (은행 지점)

5. 참 고 인

6. 예 금 잔 액

7. 수표 취급자 직위

성명

8. 기 타

1) 당좌개설 계약일 년 월 일

2) 1차부도 년월일 년 월 일

3)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일 년 월 일

4) 은행 문의 연락처 전화

9. 첨 부 : 수표사본(전·후면 복사) 1부. 끝.

* 기재요령

1) 발행자와 피고발인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.

2) 위·변조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피고발인란은 "미상" 또는 "불명"으로 기재하고 3항의 (4)발행인은 수표면상의 발행인을 기재할 것.

3) 가설인 명의의 위조수표의 경우 참고인란에 동 수표장교부 당좌거래자를 기재할 것.

4) 고발사유란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,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,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.

